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51
----------	------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2일 유만희 의원 외 11명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6일 상정·의결 (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유만희 의원)

1. 제안이유

-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이상동기 범죄(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동기 없이 발생하는 범죄)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에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2024. 02. 14.~ 2024. 02. 18.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주요기능은, 현재 전국 261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
- 서울지역의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1),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25), 자살예방센터(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3), 정신재활시설(103), 정신요양시설(3), 정신의료기관(622)이 설치되어 있음.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구분	기관수	주요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 재활 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광역 17 / 기초 24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 훈련 (광역형 5 / 기초형 53)
정신재활시설	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정신요양시설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정신의료기관	2,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계	2,813	

- 그런데 “최근 흥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범인 중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¹⁾.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의 허점의 원인으로는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홍보 부족, 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언급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체계 관련 여론 동향 >

발표기관	보도일시	보도내용
연합뉴스	2023.0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홍보 부족) 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립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소와 정신질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형 244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고강도 업무에 비해 인력 부족)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중증정신질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면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강도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는 2021년 기준 26.5명이다.

- 본 개정안은 이처럼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관리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사회복지시설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자료: 오진송, 권지현, 2023.08.08., 조현병 환자 8명 중 1명만 지역사회서 관리받는다
 방치되는 중증 정신질환자... "정부 관리체계 있지만, 이용률 저조" "환자 동의로 등록하는 시스템·인력난도 문제" 연합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7134500530>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8조의2 신설)

-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관련) 안 제8조의 2제1항은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²⁾에 대한 배치의 결정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8조의2(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p> <p>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p>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③ ~ ⑧ <생략>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종류와 관련 법이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함.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확대피해노인전용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담소 ○ 아동전문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아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디깅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치료시설 ○ 폭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질병관리청	결핵·한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디지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분,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분,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분,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 자료 :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5.

- 이러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해야만 하는 정신요양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5.12.30.>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3조 관련)

가. 시설장	1명
나. 사무국장	1명
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촉탁의사	1명 이상
라. 간호사	입소자 4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바. 영양사	1명 이상을 두되, 입소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사무원	2명 이상(입소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아. 전문요원	1명 이상을 두되,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 전문요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자. 작업지도원	1명 이상을 두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차. 조리원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을 두고,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어야 한다.
카. 위생원	입소자 100명당 1명
타. 관리인 또는 경비원	1명 이상
파.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 비고

1.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또는 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다.
2. 정신요양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가 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의무적인 것이므로, 시장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하겠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중에서도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의무적인 시설은 제외하고, ② 그 밖에 시설 중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시설을 명확하게 이 조례에 적시하여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발의 취지와 실제 달성하려는 목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중에서도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배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³⁾.
- 사회복지관의 ‘사업분야 및 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3·별표 3의2를 보면,

① ‘사업분야’에서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에 대한 사례발굴 및 개입 등 ‘사례관리 기능’을 사회복지관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별표 3), ②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기준’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도지사에게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규정된 직원 수(19명 이상)보다 많게 정할 수 있도록(별표 3의2)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3) 자료: 권오경, 2023.09.15., “유만희 시의원, 정신건강 문제 해결, ‘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제안”, 이뉴스투데이, <https://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918>

- 시장에게 ‘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재량행위를 명시하는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6. 22.>

사회복지관의 사업 (제23조의2제1항 관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

		<p>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p> <p>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p> <p>3. 노인 여가·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p> <p>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 문화행사사업</p>
	자활지원 등 기타	<p>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p> <p>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p> <p>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 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p> <p>4. 그 밖의 특화사업</p>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p>지역 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p> <p>-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p>
	주민조직화	<p>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p> <p>-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p>
	자원개발 및 관리	<p>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p> <p>-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p>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2. 6. 22.>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위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	19명 이상	13명 이상	12명 이상

비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위 표에 규정된 직원 수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관련) 다음으로, 안 제8조의2제2항은 ‘사회복지시설’ 내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범위를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무’(별표 2)로 명확하게 정하면서, 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 법 제17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① ‘공통 업무’로는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② ‘개별 업무’의 경우, 전문분야(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에 따라 별도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법」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① <생략.>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

1. 공통 업무

-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 나. 정신질환자들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다.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 사.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개별 업무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나. 정신건강간호사

- 1)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수행

- 그런데 위와 같이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다양한 업무범위’(‘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를 포함)를, 이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면서, 강행규정(“수행한다”)으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왜냐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범위’는 ① 배치될 사회복지시설의 종류(p.7 참조)와 해당 시설의 기능과 역할, ② 그 시설 종사자의 인력 구성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실제 배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노력 관련) 마지막

으로, 안 제8조의2제4항은 ①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면서, 또 ② 이미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개선 노력도 규정하려는 것인데,

-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 ⑦ (생략)</p>	<p><u>제8조의2(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① (생략)</u></p> <p><u>② ~ ③ (생략)</u></p> <p><u>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 안 제8조의2제4항이 신설될 경우, 조문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다 ‘사회복지시설’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우

선 배치하여야 할 시설로 보여질 우려는 없는지, 기존 조문과의 조화를 염두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기 주요기능은, 현재 전국 261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 이러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을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p.16 참조),
- 문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충원율은 78%로 나타나 정원 대비 현원이 9명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 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전담인력 현황(25개 자치구)

(단위: 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현원	28	33	35	36	38	38	35	36	34	33	33	32
충원율	68.3	80.5	85.4	87.8	92.7	92.7	85.4	87.8	82.9	80.5	80.5	78.0

자료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제출자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구분	사업영역	세부사업
필수 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위기개입업무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지원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지역 특화	정신건강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중독관리업무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지원사업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우울예방 등 광역단위 재난심리지원업무
	찾아가는 심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재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센터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주간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지원 정신질환 정신건강인식개선 등 지역단위 홍보·캠페인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필수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특화사업 추진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구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형	자격조건	근무형태	비고	자격	근무형태
센터장	가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경력 1년 이상 (공중보건이사 제외))	상근(주5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 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 가능.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 2일(16시간)이상 근무. 근무기간 준수 여부를 경우 부족시간 만큼을 수시 자문회의 또는 임상자문가 근무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 부센터장을 둘 수 있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경력 1년 이상(공중보건이사 제외)인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8년 이상인자, 보건소장(직영형)	근무형태
	나형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10년 이상)	상근	임상자문의 주2일(16시간) 이상 근무		상근(주5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 가능.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주 1일(8시간)이상 근무
	임면	수탁 기관장(시·도지사)과 협의) 직영형인 경우 시·도지사				수탁(기관장(시·군·구청장)과 협의) 직영형인 경우 시·군·구청장
부센터장	자격	①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8년 이상 ①②를 모두 충족한 자로 경력사항 중 정신·자살·중독센터 팀장 경력 4년 이상 포함	상근(주5일)			
	임면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 부센터장을 둘 수 있음				
상임팀장	자격	①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경력 5년 이상인 자 ①②를 모두 충족한 자로 경력사항 중 정신·자살·중독 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 포함	상근(주5일)			
	임면	팀원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1인의 상임팀장 임면 가능(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비상근이면서 상임팀장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력규모에 상관없이 상임팀장을 임명할 수 있음)				
팀장	자격	①정신건강전문요원 ②경력사항 중 정신·자살·중독 센터 경력 2년 이상 ①②를 모두 충족한 자	상근(주5일)			
	임면	상근 사업수행인력 매 4인마다 팀장 1인 임면 가능				
행정팀장	자격	정신건강사업 외 필요부서의 경우 행정팀장 임면 가능 ①제무·회계, 인사업무 경력 2년 이상 ②정신·자살·중독 센터 경력 2년 이상 ①②를 모두 충족한 자				
팀원 1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팀원 2	자격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사업수행 지원인력	업무	행정 및 회계를 포함한 사업수행인력 지원업무(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포함)				
임상 자문의	자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센터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두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 보건복지부(2023. 2.),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p42, p86.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전담인력’ 채용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총 39회의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모집인원 대비 신규 채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전담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유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원자가 없고, 근무조건(단기간, 급여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력자”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함.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담인력 채용현황(25개 자치구)

(단위: 명)

구분	공고연월	정원	모집인원	신규채용	현원	채용이 어려운 사유
1	2022년 1월	41	7	3	28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원자 없음
2	2022년 2월	41	8	5	33	
3	2022년 3월	41	2	3	35	
4	2022년 4월	41	4	3	36	
5	2022년 5월	41	7	3	38	
6	2022년 6월	41	1	2	38	○ 사업의 업무특성 고려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력자 채용 어려움
7	2022년 7월	41	3	3	35	
8	2022년 8월	41	3	1	36	○ 근무조건(단기간, 급여 등)에 맞는 지원자 부족
9	2022년 9월	41	1	1	34	
10	2022년 10월	41	4	2	33	
11	2022년 11월	41	3	2	33	
12	2022년 12월	41	3	3	32	

자료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제출자료

- 이처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담인력 부족 문제로, 센터 주요기능의 공백을 야기하고, 언론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4).

-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정신건강전문요원(붙임1 참조)을 의무 배치 시설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붙임2 참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시장의 노력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소관부서는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으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이견 없다는 의견임.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관리 등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사회복지시설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의무적인 것이므로, 시장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음.

4) 자료: 오진송, 권지현, 2023.08.08., 조현병 환자 8명 중 1명만 지역사회서 관리받는다
 방치되는 중증 정신질환자... "정부 관리체계 있지만, 이용률 저조" "환자 동의로 등록하는 시스템·인력난도 문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7134500530>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중에서도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의무적인 시설은 제외하고, ② 그 밖에 시설 중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시설(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명확하게 이 조례에 적시하여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범위’는 ① 배치될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기능과 역할, ② 그 시설 종사자의 인력 구성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실제 배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끝으로 안 제8조의2제4항이 신설될 경우, 조문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우선 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이 우선 배치하여야 할 시설로 보여질 우려는 없는지, 기존 조문과의 조화를 염두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끝으로 안 제8조의2제4항이 신설될 경우, 조문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우선 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이 우선 배치하여야 할 시설로 보여질 우려는 없는지, 기존 조문과의 조화를 염두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붙임1]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통계(2023.11.기준)

가 | 정신건강전문요원 누적 배출 현황

(2023. 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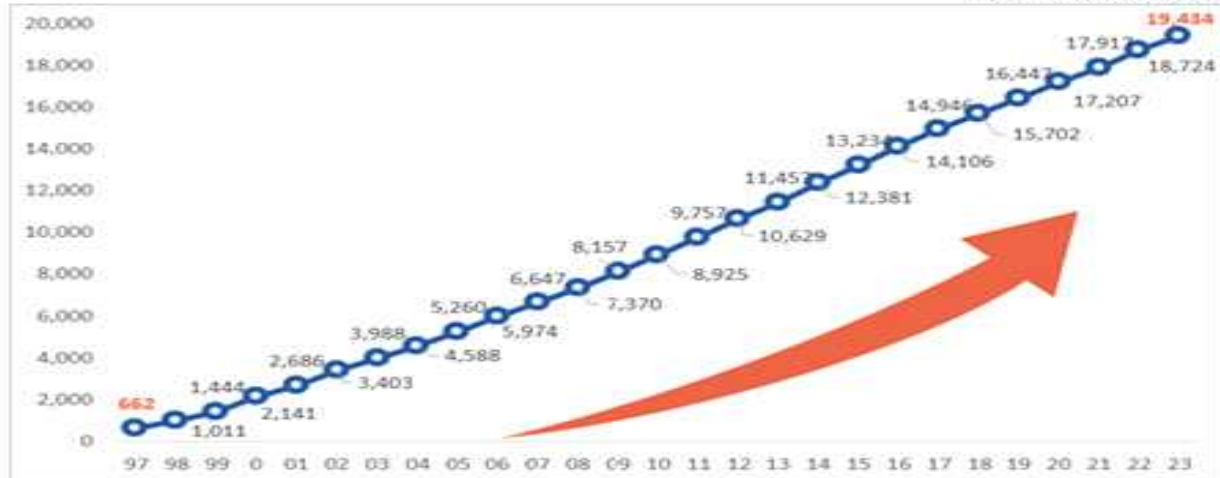
구분	배출인원(명)	비율(%)
정신건강 간호사	1급 3,530	49
	2급 6,009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급 3,010	32
	2급 3,177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2,100	18
	2급 1,486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1급 17	1
	2급 105	
계	19,434	100



* 1급과 2급 자격 모두 소지한 경우 1급으로 산출

나 | 정신건강전문요원 연도별 누적 배출 현황

(23. 11. 기준, 단위: 명)



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연도별 신규배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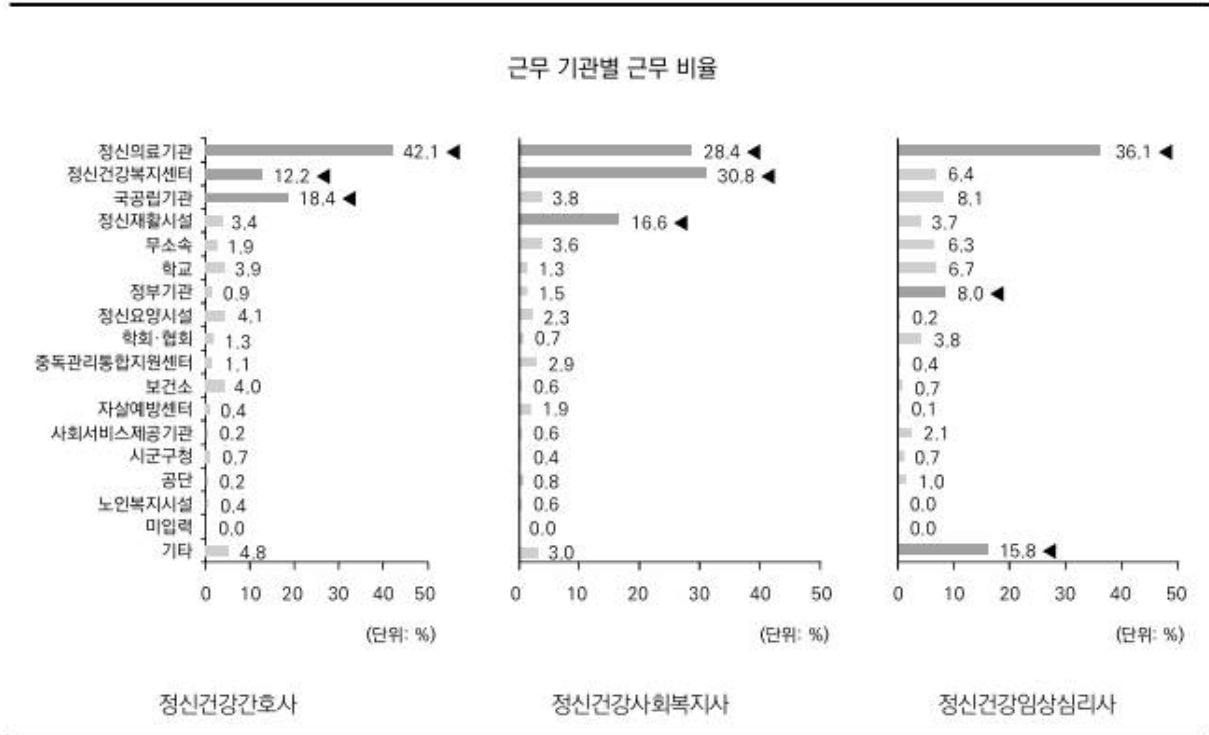
(23. 11. 기준, 단위: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24. 1.) 정신건강 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p110~111.

【붙임2】 근무 기관별 정신건강전문요원 현황(2019년 기준)

그림 2. 근무 기관별 정신건강전문요원 현황(2019년)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b).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임.

자료 : 이상훈(2020) 정신건강인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년 4월 통권 제282호, pp.43-54

[붙임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

종류 등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1.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1.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치료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2.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2.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2.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3.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급	1.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학위 취득 과정에서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종류 등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1. 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비고: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2024. 1.) 정신건강 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p84~8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함.
-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범위’는 시설의 상황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 끝으로 이 조례 조문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시설 ‘우선 배치’ 규정은 삭제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의2).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51
----------	------------

제안년월일 : 2024년 2월 26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함.
-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범위'는 시설의 상황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 끝으로 이 조례 조문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시설 '우선 배치' 규정은 삭제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의2).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의 제목 “(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신 설></p>	<p>제8조의2(사회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사회복지시설</u>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u>수행</u>한다.</p> <p>③ 시장은 <u>사회복지시설</u>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u>사회복지</u></p>	<p>제8조의2(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① -----</p> <p>-----</p> <p>-----</p> <p>-----</p> <p>----- <u>종합</u></p> <p><u>사회복지관</u>-----</p> <p>-----</p> <p>-----.</p> <p>② -----</p> <p>-----</p> <p>-----</p> <p>-----</p> <p>----- <u>수행</u></p> <p><u>할 수 있다.</u></p> <p>③ ----- <u>종합사회</u></p> <p><u>복지관</u> -----</p> <p>-----</p> <p>-----</p> <p>-----</p> <p>-----.</p>

시설에 정신건강전
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에 배치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처우개
선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④ ---- 종합사회복
지관-----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의2(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① 시장은 <u>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u>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u>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④ 시장은 <u>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